

#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A Study on Improvement of National Pension System for Ensuring Elderly Women's Incomes

이 재 회\*  
고신대학교 가정복지학과

Lee Jae Hee  
Department of Familylife Welfare, Kosin University

### Abstract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tends to be sexually discriminatory in that it excludes elderly women. It is because the system is based on family incomes usually earned by men. Considering structural changes in a family - for example, a growing divorce rate, an increasing number of unmarried couples living together, and broken families - and socio-economic changes - such as an improved level of women's education and more femal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is paper will make some suggestions as follows: 1) to introduce basic pension system which guarantees incomes for the elderly with "one pension per person" policy; 2) to enlarge voluntary enrollment; 3) to implement pension credit system which pays women allowances for childbirth and upbringing; 4) to improve ways of allotting retirement pension of a husband; also to provide for an elderly woman both divided pension that derives from her husband's pension and an old-age pension of her own.

**Key words** : national pansion system, basic pansion system, voluntary enrollment, pension credit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해 가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적 발전이 여성의 역할을 변화시키게 되었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가 변하게 되었으며 여성의 욕구도 다양화 되어 여성의 사회참여나 취업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교육수준의 확대와 경제적 필요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앞으로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성은 소득구조 및 취업구조의 불평등과 성차별이 누적되어 노후로 이어지면서 여성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다.

1996년 「가구소비실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빈곤율은 9.3%이나 노인가구 빈곤율은 31.0%에 이르고, 이 중 여성가구주 가구비율이 67.4%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수준도 빈곤 남성가구주 가구의 6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상황에 놓여져 있다(문숙재·여운경·임혜은, 2002).

그리고 2001년 통계청의 생명표에 의하면 평균수명이 남자 72.8세, 여자 80.0세로 여자가 7.2년 더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05년 기대여명이 남자 74.4세, 여자 79.5세로 여자가 5.1년이 더 긴 것으로 되어있다(통계청, 2003).

그러나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외형적으로는 성에 관계없이 중립적인 입장

\* Corresponding author: Lee, Jae-Hee  
Tel) 042-864-0598  
E-mail) jaelee@kosin.ac.kr

을 취하고 있으나 소득발생주의에 기초하여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노인을 배제시키거나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여성은 결혼 및 출산·양육 등으로 남성에 비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 소득활동자 중심의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독립적인 수급권을 획득하기 어렵고 경제활동에 참가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와 저임금의 임시직·일용직·시간제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종사하거나 영세 자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매우 낮은 연금수준의 수급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국민연금 가입 및 경제활동에 따른 급여현황을 분석하고, 수급자 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복지나 가정복지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방법과 구성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문헌과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유형, 국민연금제도의 가입 및 수급조건을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현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성차별적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끝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여성노후소득보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범위와 한계

본 연구의 범위는 국민연금제도의 대상, 급여, 전달체

계, 재정 중에서 대상과 급여부분만을 다루며 특히 연금의 가입 및 급여 현황을 성별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외형적으로는 남녀 평등한 국민연금법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과 문제점에 초점을 두어 여성의 경제활동에 따른 연금액을 산정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유형

#### 1)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국민연금가입율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지표로 2002년 3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이 49.7%이며, 남성은 74.8%로서 남성의 2/3 수준으로 훨씬 낮은 상태이며, 특히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1998년 여성은 47.0%, 남성은 75.2%로 남성에 비해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남성은 구조조정 등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혼인상태별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미혼여성이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이상인데 비해 이혼 및 사별한 여성의 경제활동율은 38.7%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이혼이나 사별한 여성이 재산분배로 인한 경제력이 생겼거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부정적이어서 취업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199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2
여 성	47.0	48.7	49.5	47.0	47.4	48.3	49.7
남 성	74.0	76.1	75.6	75.2	74.4	74.0	74.8
전 체	60.0	62.0	62.2	60.7	60.9	61.2	62.3

자료 : 정재훈(2001), 한국여성개발원(2003)에서 재구성

<표 2> 여성가구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단위 : %)

	미혼 여성가구주			기혼 여성가구주			이혼, 사별한 여성가구주		
	1998	2000	2002	1998	2000	2002	1998	2000	2002
경제활동참가율	46.0	47.0	50.6	49.8	51.2	52.0	37.1	38.8	38.7
실업률	10.9	6.9	5.7	3.9	2.1	1.4	4.2	2.5	2.1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2003), 여성통계DB

또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령별 변동추이를 살펴 보면 <표 3>과 같이 15-19세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참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고학력화로 20-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가 크게 활발하나 25-3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하며 40-50대 연령층의 증가율이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것은 25-34세 연령층이 결혼, 출산, 아동양육으로 경제활동참가가 단절되는 경향으로써 여성 근로자 대부분이 결혼

및 출산으로 퇴직한 이후, 아이들이 충분히 성장한 이후에나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시도하는 생애취업주기에 있어서 'M자 유형'을 보이고 있다(정재훈, 2001). 그러나 2000년 이후는 쌍봉현상이 뚜렷하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여성이 결혼 후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독신이나 출산기피 등으로 인해 계속 취업하는 경향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 내역을 보면 <표

<표 3>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이

(단위: %)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체
1970	43.7	47.3	34.7	38.4	42.7	46.9	46.6	41.1	37.1	14.9	39.3
1975	40.5	47.3	29.5	37.0	48.0	51.6	50.9	50.8	44.8	17.1	40.4
1980	34.4	53.5	32.0	40.7	53.0	57.0	57.3	54.0	46.2	17.0	42.8
1985	21.1	55.0	35.8	43.6	52.8	58.3	59.3	52.4	47.2	19.2	41.9
1990	18.6	64.5	42.8	49.6	58.0	60.5	63.9	60.0	54.4	26.5	47.0
1995	14.6	66.1	47.8	47.5	59.2	66.0	61.1	58.3	54.2	28.9	48.3
2000	12.5	60.8	55.9	48.5	59.1	63.4	64.6	55.2	50.8	34.5	48.3
2002	11.7	62.4	59.4	49.8	59.3	63.8	64.0	58.0	49.6	30.1	49.7

자료 : 김용하 외 1인(1997), 한국여성개발원(2003)에서 재구성

<표 4>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천명)

전 체	비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소계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소계	상용	임시	일용
9,225 (100.0)	3,368 (36.5)	304 (3.3)	1,482 (16.1)	1,582 (17.1)	5,857 (63.5)	1,968 (21.3)	2,682 (29.1)	1207 (13.1)

자료: 한국여성개발원(2003)

\* M 자형 취업 유형: "결혼을 고비로 취업률이 낮아지다가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 다시 재취업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쌍봉형' 취업 유형 (double peak type)"

4>와 같이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36.5%이고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63.5%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무급가족종사자수가 노령화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도시지역의 임금근로 여성의 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과 국민연금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은 결혼 및 출산·양육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한 계속취업자(A유형)와 취업 후 결혼 및 출산·양육 등으로 일시 휴직기를 지나 재취업한 재취업자(B유형), 취업 후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비취업자(C유형)와, 결혼 전부터 취업하지 않은 계속비취업자(D유형)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C유형과 D유형은 전업주부이다.

### (1) 계속취업자(A유형)

결혼이나 출산·양육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을 한 여성은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요건을 충족시켜 연금의 수급권을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직면할 수 있는 문제는 2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하나는 고용형태가 불안정하여 연금제도의 적용이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매우 낮은 연금수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첫째, 구조적 적용배제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은 임시직·일용직·시간제 등 불안정 고용형태로 근로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자영자의 경우 가족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연금제도가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대해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낮은 소득수준에 기인한 낮은 연금수준의 문제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상당수가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 (2) 취업 후 출산·육아 등으로 일시 퇴직한 후 재취업자(B유형)

취업 후 출산·양육 등으로 일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한 경우는 계속취업자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문제와 더불어 연금수급기간 요건충족이라는 3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첫째, 어느 만큼의 공백 후 소득활동을 다시 시작했

는가에 따라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육아기간이 길어지므로 최소가입기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혼을 하여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구조적 적용배제의 위험이 재취업자의 경우 계속취업자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재취업의 경우 당초 취업보다 모든 근로조건을 몇 단계 낮추어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금제도 적용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 있다.

세째, 낮은 소득수준에 의한 낮은 연금수준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재취업자의 경우 역시 동일한 이유에서 계속취업자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 (3) 취업후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비취업자(C유형)

퇴직후 전업주부인 비취업자의 경우 연금수급요건의 미충족과 구조적 적용배제라는 2가지 종류의 문제에 직면하며 결과적으로 무연금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A유형이나 B유형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이들은 배우자의 소득에만 의존하여 생활하였기 때문에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과 같은 위험에 직면할 경우 소득의 단절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소액의 분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심각한 노후소득보장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 (4) 계속비취업자(D유형)

계속비취업자는 경제활동 여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연금수급권이 결정되는 현행 연금체계에서 무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4가지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C유형과 마찬가지로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이 노후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재혼할 경우 분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며 연금의 병급을 제한하는 것은 저소득 이혼여성의 노후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석재은, 2001)

이와 같이 국민연금제도는 형식상 가입 및 급여 제공에서 남녀 간 차별을 하지 않고 있으나 고용구조,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 유형, 임금구조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한 독자적인 연금 수급권을 갖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제활동 C유형과 D유형과 같이 가정 내에서 수행되는 가사노동이 무보수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조차 제한되어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가치마저 평가 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동양육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노후에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육아휴직의 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는 여성 가입자가 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양육에 근거한 독자적 연금 수급권 확보 개념에는 맞지 않는다(정재훈, 2001).

## 2. 국민연금제도의 가입 및 급여조건

### 1) 가입대상과 종류

국민연금은 공공체도로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가입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물론 가입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자도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가

입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국민연금법 제6조).

국민연금법상의 가입자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된다(국민연금법, 제7조).

### 2) 급여종류와 수급 및 급여조건

국민연금법상 규정된 연금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1, 2, 3급),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이 있다. 노령연금에는 완전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시 수급자의 노령연금에서 분할하여 배우자에게 급여되는 분할연금이 있다.

급여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은 <표 5>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즉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하며 60세 이상이 되어야 수급할 수 있으며 1999년 1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 및 가입기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1.8(A+B)×(1+0.05 N)이다.

여기서 1.8은 가입기간이 40년인 경우의 급여수준을

<표 5> 국민연금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될 때	기본연금의 100%+가급연금액
	감액노령연금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하고 60세가 될 때	기본연금의 47.5%~92.5%+가급연금액
	특례노령연금	1988년 1월 1일 기준으로 45-60세 미만이었으며 5년 이상 가입 할 때	기본연금의 25%(추가 가입연도마다)+가급연금액
	재직자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은퇴하고 수급을 희망할 때	기본연금액의 50~90% (연령별로 차등화)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은퇴하고 수급을 희망할 때	기본연금액의 36-45%+가급연금액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배우자가 연금을 수급 할 때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한 금액
	장애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가 있으며 장애가 존속할 때	등급별로 상이함
	유족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10년 이상 가입하였던 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기본연금액의 40-60%+가급연금액
	반환일시금	·60세에 달한 때 ·가입자의 사망 ·국적상실 또는 해외이주	연금보험료+가입기간의 이자+지급사유 발생까지의 가산금
	사망일시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연 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유족이 없을 때	반환일시금 상당액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2000)

결정하는 비례상수이며 이는 가입자 표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자의 급여수준이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60%가 되도록 결정한 것이다. A값은 연금수급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의미하며 연금 급여산정공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표현한 것이다. B값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의미하며 이는 개별적 기여에 상응하는 연금급여의 결정요인이다. 0.05는 최소가입기간인 20년을 초과하는 매 년도에 대해 급여수준을 부가하도록 고안된 상수이고 N은 20년을 초과하는 가입기간 월수를 의미한다.

#### 4) 비용부담

국민연금제도에 소용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사용자, 정부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없으므로 가입자가 사용자 몫을 부담하여야 한다.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보수 월액의 9%로 가입자,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현재 소득월액의 6%를 부담하고 있으나 보험료를 인상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 2005년 7월 이후부터는 다같이 9%로 된다(현외성, 2003)

### III.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 현황

#### 1. 국민연금 가입현황

아직 정상노령연금 수급시대가 도래되지 않았지만,

특례 노령연금은 1993년부터, 조기 노령연금은 199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국민연금제도에 나타난 성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성별·가입종별 현황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서 1995년 총 가입자수 7,257천여 명 가운데 여성은 1,891천여 명으로 26.1%였으며 2003년 7월 현재 국민연금의 총 가입자수는 <표 7>과 같이 17,037천여 명이고, 이 중 여성은 5,757천여 명으로 33.8%이며, 남성은 11,280천여 명으로, 66.2%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남성에 비해 1/2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입종별로 살펴보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남성은 68.5%, 여성은 31.5%로 총가입자 비율보다 더 성별 격차가 나타났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남성이 65.0%, 여성이 35.0%로 성별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임의가입자의 경우 남성이 20.0%인데 비하여 여성이 80.0%로 사업장가입자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으며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남성이 57.5%, 여성이 42.5%로 성별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 임의가입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피용자 형태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인 임시직, 시간제근로자, 일용직 등 불안정한 형태의 취업비중이 높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 2) 여성의 연령별 가입현황

여성의 연령별 국민연금의 가입현황을 보면 <표 8>과 같이 55-59세의 연령층의 경우 총인구의 38.9%, 취업자의 56.2%가 가입하고 있어 전 연령계층 중 가장 높

<표 6> 보험료를 기준

구분	1988-1992	1993-1997	1988이후	1999.4.1 이후
전체	3.0%	6.0%	9.0%	9.0%
사업장 가입자				
피용자	1.5%	2.0%	3.0%	4.5%
사용자	1.5%	2.0%	3.0%	4.5%
퇴직금 전환금	-	2.0%	3.0%	
임의적용·계속적용 가입자	3.0%	6.0%		9.0%
농어촌지역 가입자				
1995-2000		2000-2005	2005이후	
3%		6%	9%	
도시지역 가입자				
1999.4.-2000.6		2000.7-2005.6	2005.7 이후	
3%		매년 1%인상	9%	

자료: 현외성(2003)

<표 7> 성별·가입종별 국민연금 가입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여자	5,757,374(33.8)	2,126,474(31.5)	3,515,686(35.0)	20,704(80.0)	94,510(42.5)
남자	11,280,387(66.2)	4,617,776(68.5)	6,529,853(65.0)	5,001(20.0)	127,757(57.5)
계	17,037,761(100)	6,744,250(100)	10,045,539(100)	25,705(100)	222,267(100)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

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5-39세의 경우 총인구의 13.6%, 취업자의 36.4%로, 19세 미만 연령층과 60세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계층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20-24세 까지 국민연금 가입율이 높아지다가 25-29세 연령층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출산 및 양육의 시기인 35세-39세에 최하로 되었다가, 50-59세 연령층까지 계속하여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과 같은 M유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출산 및 양육의 시기인 30-39세 여성의 경우 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같은 연령계층의 남성 에 비해 대체로 1/7의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대 다수의 여성들은 저소득 등급에 집중되어 노후소득보장의 취약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여성가입현황을 고려할 때 노

동시장 내 여성지위가 우선적으로 향상되어야 함은 물론 연금제도 내에서 여성들의 가입유형에 반영되어 있는 여성들의 출산·육아 등 가사노동에 대한 역할수행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2. 국민연금 급여현황

2002년도 급여지급액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15,255백만 원에서 노령연금이 1,254,730백만 원(65.5%)로 가장 많았으며 유족연금이 293,950백만 원(15.4%)으로 2순위, 반환일시금이 238,685백만 원(12.46%)으로 3순위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의 정상 지급은 2008년에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지급되고 있는 노령연금은 특례노령연금으로 1993년부터 지급되고 있다.

2002년 특례노령연금의 경우 <표 9>에서 보는 바와

<표 8> 여성의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현황(2002)

(단위: 천명, %)

	인구 (A)	경제활동인구 (B)	취업자 (C)	국민연금가입자 (D)	D/A	D/B	D/C
18~19세	313	191	172	52	15.9	27.2	30.2
20~24세	1,784	1,209	1,131	494	27.6	40.9	43.7
25~29세	2,702	1,163	1,126	602	22.3	51.8	53.5
30~34세	3,058	1,072	1,045	460	15.0	42.9	44.0
35~39세	3,154	1,205	1,182	430	13.6	35.7	36.4
40~44세	3,274	1,337	1,315	525	16.0	39.3	39.9
45~49세	2,582	1,058	1,045	430	16.7	40.6	41.1
50~54세	1,795	721	711	316	17.6	43.8	44.4
55~59세	1,303	511	507	285	38.9	55.8	56.2
60세이상	2,204	999	992	91	4.1	9.1	9.2
전체	22,169	9,446	9,225	3,688	16.6	39.0	40.0

자료: 국민연금 관리공단(2002), 한국여성개발원(2002)

&lt;표 9&gt; 성별·급여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2002)

(단위: 명, %)

급여종류	전 체(A)	여 성(B)	남성(C)	B/A	C/A
특례노령연금	717,488	200,044	517,444	16.8	83.2
장애연금	32,876	3,464	29,412	8.5	91.5
장애일시보상금	2,194	234	1,960	9.3	90.7
유족연금	171,186	158,584	12,602	92.2	7.8
반환일시금	129,570	65,928	63,642	51.8	48.2
사망일시금	6,051	2,055	3,996	30.0	70.0
계	1,059,365	430,309	629,056	48.2	51.8

자료: 국민연금 관리공단(2002)

같이 전체 수급자 중 남성이 517천여 명(83.2%), 여성이 200천여 명(16.8%) 정도로 남성수급자가 여성수급자의 4배 정도 많다. 이는 기여에 의한 독립적 수급권자로 노령연금에서는 남성이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급액에서도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급액 1,254,729,855원 중 남성이 79.9%인 1,002,728,665원이며, 여성이 20.1%인 252,001,189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정도 많은 성별 격차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연금액을 보면 남성은 1,937,800원, 여성은 1,259,300원이며 남성은 월 161,400원, 여성은 104,500원으로 남성의 65% 수준이다. 이처럼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대부분 남성이며 1인당 수급액 역시 남성이 60% 정도 많은 것으로 보아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소득발생 중심, 남성 중심의 제도로서 성별격차를 볼 수 있다.

## 2) 유족연금

유족연금의 수급자 분포를 보면 <표 9>와 같이 여성이 158,584명으로 92.2%를 차지하고 남성은 12,602명으로 7.8%로써 수급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나타나 특례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과 대조적인 현상을 볼 수 있다. 유

족연금 수급액 역시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이 전체 수급액의 94.6%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수급액은 5.4%로 수급자 비율 보다 더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유족연금액은 1,753,900원으로 월 146,100원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 생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와 같이 많은 여성들은 독립적인 수급권을 가지기 보다는 피부양자인 유족으로 파생적 연금수급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금액이 매우 적음으로 여성의 빈곤화를 초래하게 된다

## 3)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제도는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도달하게 되었을 경우, 가입자가 중도에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가입자가 해외로 영구 이주하게 되었을 경우, 가입자격 상실 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그리고 신분의 변화로 인하여 타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되었을 경우 지급된다.

2002년 현재 여성수급자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이 65,928명으로 51.8%이고 남성수급자는 63,642

&lt;표 10&gt; 성별·급여별 국민연금 수급액 현황

(단위: 천원)

급여종류	전 체(A)	여 성(B)	남성(C)	B/A	C/A
특례노령연금	1,254,729,855	252,001,189	1,002,728,665	20.1	79.9
장애연금	103,849,013	9,231,129	94,617,885	8.9	91.1
장애일시보상금	16,418,591	1,734,619	14,683,972	10.6	89.4
유족연금	293,950,328	278,155,429	15,794,899	94.6	5.4
반환일시금	238,684,803	67,686,301	170,998,501	28.3	71.7
사망일시금	7,622,389	2,479,737	2,479,737	32.5	67.5
계	1,915,254,978	611,288,404	1,303,966,574	31.9	68.1

자료: 국민연금 관리공단(2002)



명으로 48.2%로 여성수급자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 10>의 수급액은 남성이 71.7%, 여성이 28.3%로 남성이 3배 정도 많으며 평균수급액도 남성은 2,686,000원이며 여성이 1,026,000원으로 남성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받는 수급자는 여성이 많은데 비해 연금액은 남성이 3배 정도나 많은 것으로 보아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연금종별·성별 수급현황에 의하면 국민연금에서 대다수 여성들이 독립적인 수급권을 가지지 못하고 피부양자인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에 편중되어 있으며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및 장애일시금은 대부분 남성들이 수급하는 연금으로 성별 분리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동시장내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본설계구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소득 발생 중심, 남성 중심의 가구단위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보장 받으려면 노동시장에 직접 참가하여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아니면 남편이라는 부양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취업을 하지 않은 기혼 여성은 자신의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독자적인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는 대신 남편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에 의존적인 가족성원의 자격으로 가급연금을 받을 수 있다(조흥식·김혜련·신혜섭·김혜란, 2000).

그러나 가급연금액은 2001년 현재 연 166,270원, 월 13,855원, 일 460원 정도로는 1일 교통비도 되지 않는 파생적 수급권으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과는 거리가 있다.

#### IV. 국민연금제도에서 여성노후소득보장의 문제점

2008년부터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가 차지하는 의미는 급격하게 커질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의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어렵게 하는 경제활동 유형별 연금예상액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연금예상액

###### 1) 계속취업자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년간 지속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낸 정상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이 가장 중요한 연금급여수준의 결정요인이 된다. 2002년 시점을 기준으로 여성 및 남성가입자가 표준소득월액(남성은 1,850,000원, 여성은 1,167,000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산정공식에 의해 계산한 결과는 <사례 1>과 같이 남성 노령연금 급여액은 월 943,200원, 여성은 738,300원이 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소득에 대한 성별 불평등이 국민연금제도에서도 그대로 반영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여성이 계속적으로 취업을 할 경우 노동시장에서 평균소득의 성별격차가 100 : 63인데 비해 기본연금액 산정에서 연금의 성별격차는 100 : 78로 20%줄어든 것이다(허지영, 2002; 엄규숙, 2002).

이처럼 표준소득월액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소득대체율과 관계가 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 자신이 부은 금액보다 높은 수익률로 많은 금액을 수급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낮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써 남성에 비해 여성의 평균임금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연금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필요가 있다.

##### <사례1>

$$\begin{aligned} \text{남성: } & 1,8(1,294,0001 + 1,850,0002) \times \\ & (1 + (0.05 \times 20)) = 11,318,400 (\text{월 } 943,200\text{원}^*) \\ \text{여성: } & 1,8(1,294,000 + 1,167,0003) \\ & \times (1 + (0.05 \times 20)) = 8,859,600 (\text{월 } 738,300\text{원}^*) \end{aligned}$$

- 1 2002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 2 2002년도 5인 이상 사업장 남성 평균임금을 적용하였음
- 3 2002년도 5인 이상 사업장 여성 평균임금을 적용하였음
- \* 2002년도 현재가치로서 실제로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2008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됨

###### 2) 결혼 및 육아로 휴직기를 거쳐 재취업을 한 경우

결혼 전 4년간 취업하였다가 결혼 및 육아로 10년간 휴직기를 지낸 여성을 경제활동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무급가족종사자(A여성), 비정규직 임금노동자(B여성), 자영업자(C여성)로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연금액을 산정해 본 결과 <사례2>와 같다.

첫 번째, 무급가족종사자로 재취업을 할 경우, A여성과 같이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을 하지 않으면 연금제도의 적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두 번째로, 재취업을 하여 임금노동을 하는 경우, B여성과 같이 30대 중반 이후 여성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이전보다는 낮은 노동시장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3.7%로써 5년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650,000원, 임시·일용·시간제 노동자는 577,000원을 적용하면 연금수급액은 월 420,975원이며 더욱이 이들에게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비율은 22.1%에 불과하다.

세 번째로, 자영업자의 경우, C여성과 같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30-39세 여성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760,000원, 영세상인 587,000원으로써 자영업의 규모에 따라 월 462,150원에서 423,225원의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허지영, 2002; 엄규숙, 2002에서 재구성).

이와 같이 A여성은 임의가입을 하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고, B여성의 경우는 취업지위에 따라 달라져 사업장 근로 시는 650,000원, 임시직·일용직·시간제 노동자로 근로할 경우 연금수급액은 577,000원으로 월 420,975원이다. 이처럼 취업기간이 계속취업자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휴직을 했다가 재취업을 한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은 취업을 계속한 여성의 절반 이하의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사례2>

A여성: 전체 가입기간이 4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혜자격 없음  
 B여성:  $1.8(1,294,000 + 577,000) \times (1+(0.05 \times 10)) = 5,051,700$ (월 420,975원)  
 C여성:  $1.8(1,294,000 + 760,000$  또는  $587,000) \times (1+(0.05 \times 10)) = 5,545,800$  또는  $5,078,700$ (월 462,150원 또는 423,225원)

3) 전업주부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 중 C유형이나 D유형과 같이 유급의 시장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무급의 가사 및 양육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적인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무연금자이다. 단지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가장의 부양가족의 일원으로서 3가지 형으로 <사례 3>과 같이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즉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A형)와 남편이 사망한 경우(B형), 이혼한 경우(C형)이다.

만일 어떤 여성이 <사례 1>의 남성과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A형)는 남편의 노령연금 943,200원으로 남편과 공유할 수 있으나 남편이 사망한 경우(B형)는 유족연금으로 수급권이 발생하여 청구권자 생전 연금의 60%인 565,920원이 주어진다. 만일 이혼을 한다면(C형),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이 발생하는데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전제로 하며 분할은 남성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동등하게 지급한다. 혼인기간이 10년이고 전체 가입기간이 20년이면 연금액을 2등분 한 금액을 다시 반분하여 235,800원이 지급되는 것이다(허지영, 2002; 엄규숙, 2002에서 재구성).

<사례3>

A형: 평생 전업주부이고 노후를 같이 보내는 여성:  
 943,200원의 연금을 공유  
 B형: 남편이 사망한 경우:  $943,200 \times 0.6 = 565,920$ 원의 유족연금  
 C형: 이혼한 경우(혼인기간 10년):  
 $(943,200 \div 2) \times 0.5 = 235,800$ 원

위의 예들은 성별, 평균 소득자를 중심으로, 가상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다양한 삶이나 경제활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한계를 짐작할 수 있다.

2.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가입 및 급여 제공에서 형식상 남녀 간 차별을 하지 않고 있으나 고용구조, 경제활동참가 유형, 임금구조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여성이 독자적인 연금 수급권을 갖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1) 무연금의 문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차별되어 나타나는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여성의 소득은 가계보조비 정도로만 보는 사고와 가사노동을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식하지

않고 가족에 대한 봉사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무급노동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취업여성은 취업을 하였더라도 음식업, 숙박업 등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임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비공식부분에 종사하는 노동자, 가족종사자, 가사노동자와 같은 노동자군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편입이 어렵고 보험료 부담이 높은 임의가입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무연금으로 국민연금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령, 장애,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고 단지 남성 가장의 피부양자로 유족연금이나 가급연금의 수급권만 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매우 적음으로 노후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취업의 경험이 없는 여성들은 이혼 후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Blau & Ferber, 1986).

2) 최소 10년의 충족기간 문제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의하여 여성은 취업 후 결혼 및 출산, 육아·가사·간병 등 무급의 가사노동 수행으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제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가입현황을 보면, 여성가입자는 남성의 1/2정도이며 급여현황에서는 독립적 연금수급권인 노령연금, 장애연금 수급자는 남성의 1/10정도로 매우 미비하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환일시금의 30세 미만의 여성수급자는 남성의 10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출산을 저하와 여성노인의 빈곤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사노동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5년, 프랑스의 경우 3개월, 영국의 경우 약 52개월, 미국의 경우는 10년으로 반환일시금 제도가 없는 대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 년 수를 낮게 설정하고 있다.

3) 연금분할의 수급시기 문제

연금분할의 대상은 노령연금으로, 재산청구권 취지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연금의 경우 이혼 후 당사자와 배우자인 가입자가 공히 60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재산청구권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연금분할은 당연히 이혼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혼 후 배우자가 재혼을 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였을 경우 또는 장애를 입게 되었을 경우 분할연금의 청

구권이 상실하게 된다.

또한 수급자가 재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지급의 효력이 중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할연금수급자는 이혼 후 계속해서 독신으로 생활하도록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조항으로 혼인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 즉 현행의 연금분할제도에서 그 주된 대상자는 여성들로서 과거의 가정유지를 위하여 기여한 자신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혼 후 독립적인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확보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이정우, 2002).

4) 수급권의 병급 금지 문제

여성은 일정기간 취업하였다가 육아·가사·간병 등 가사노동 수행을 위하여 퇴직한 후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여성이 재혼할 경우,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하고(국민연금법, 제 62조) 있어 자신의 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및 장애연금과 병행하여 수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연금법, 제 52조). 그러나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병급 문제에 직면한 여성 집단의 75% 내외가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평균소득월액이 평균 이하 즉 22만원에서 65만 5천 원으로 노후 생계유지에 애로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받는 여성은 반드시 전업주부여야 한다는 현 제도는 매우 비합리적인 것이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의해 부양되는 존재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자신의 기여에 의해 발생한 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한 파생적 청구권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엄규숙, 2002).

또한 이러한 규정은 이혼 여성의 근로의욕과 연금 가입 의지를 억제하여 당사자의 노후빈곤을 조장하게 될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경우는 연금분할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연금분할의 청구권이 배우자의 신분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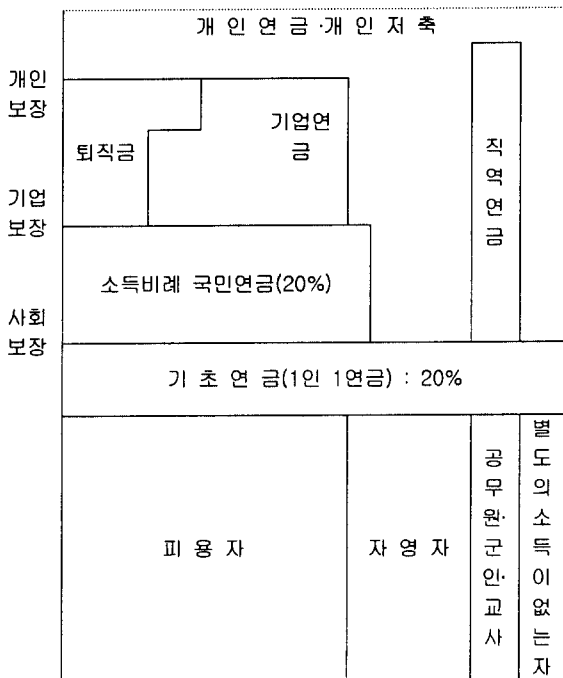
더욱이 이러한 수급권의 병급 제한 규정은 가족구조 변화와 가족해체로 점점 늘어나는 여성단독가구의 빈곤을 조장하고 심화시키게 될 것이며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평가 절하하며 여성의 노후 빈곤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V.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본 연구는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성이나 가족 지위 또는 가족보호활동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사회적 수용성이 높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실행가능성이 높은 4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1. 기초연금제도 도입

여성의 빈곤화를 최소화하며 한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무급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그림 1>과 같이 국민연금에 도입 하는 것을 제안 하고자 한다.



자료: 석재은(2001)

<그림 1> 기초연금제도의 기본구조

<그림 1>의 기초연금제도는 피용자, 자영자, 특수직역가입자 등 기존가입자 뿐만 아니라 주부, 군복무자, 실업자 등 비경제활동자를 포함하는 전국민을 단일 연금제도로 묶는다는 점에서 일체형적 특성을 지니면서도, 기존의 국민연금, 3개 특수직역연금, 퇴직금의 제도적 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면에서 다원적인 특징을 동시

에 지니고 있는 모형이다.

기초연금의 급여율은 매년 전 가입자평균소득의 20% 수준으로 정액급여하며, 저소득, 의무군역, 출산·육아 등으로 보험료를 불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가입 기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국민 누구나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석재은, 2001).

일본은 1986년부터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전업주부의 경우 별도의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배우자인 남편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의해 대체되도록 하고 있어 여성의 무연금 문제를 해결하였다(윤석명·주은선, 2000).

이처럼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 기존의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같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하면 사회보장비용을 줄일 수 있다.

### 2. 임의가입의 확대

일정기간 경제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가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여성들이나 무급의 가족종사자, 전업주부 등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임의가입을 확대함으로써 독립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토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은행 및 보험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연금 보다 수익성이 월등히 높고 안전성도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들은 보다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본인이 불입한 액수의 평균 2.3배를 수급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김용하, 1997).

실제로 A씨는 1994년 2월에 가입해 2002년 4월까지 99개월 가입해 총 4백96만원을 납입하였는데 2002년 5월부터 월 15만 4천원의 연금을 받고 있어 납입액의 3배를 종신토록 받을 수 있으며, B씨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이 시작되면서 가입해 1999년 5월까지 113개월간 총 4백 41만 원을 부었고 1998년 5월 첫 연금으로 월 24만 원을 지급 받았으며 올 8월에는 월 29만 원 가량 받았다. 즉 한 달에 평균 3만 9천 원씩을 붓고 7배가량을 종신토록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최고 등급(월소득 3백 90만원)인 C씨는 매달 32만 4천 원을 내고 있는데 C씨가 연금을 타게 되는 2030년이 되면 낸 보험료 액수와 연금액이 비슷해 질 수 있는 상황이다(경향신문사, 2003: 10. 23).

이처럼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일수록 수익성이 높게 설

계되어 있기 때문에 무보수노동을 수행하는 전업주부에 게 보험료율이 높긴 하지만 임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3. 연금크레딧제도의 도입

연금 크레딧제도란 병역이나 사회봉사, 자녀양육, 노부모 수발 등 소득은 발생하지 않지만 사회적 기여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인구계층에 대한 보험료를 낮은 수준으로 감면 혹은 면제해 주고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고용보험이나 일반 조세 등을 통하여 보조해주는 제도이다(석재은, 2001). 여성취업자의 상당수가 출산·육아·개호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직하고, 그 결과 최소수급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독립적 연금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금크레딧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소득자와의 이혼이나 별거, 소득자 사망시 무급의 가사노동자인 배우자에게 소득이 중단되는데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국민연금제도의 가입 및 급여조건에 반영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가사노동 수행으로 인한 연금 급여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육아 및 수발 등으로 인한 비취업 기간을 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산정해주거나 양육 및 수발 기간에 따라 급여수준을 인상 시켜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반환일시금 제도가 없는 대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연수를 독일은 5년, 프랑스는 3개월, 영국은 52개월, 미국은 10년으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다(김용하·석재은, 1997). 일본의 경우는 1994년부터 차세대를 책임지는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육아휴직 중 본인 부담분의 보험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독일은 양육이나 수발 등의 가족 내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여 1992년 이후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출산일로부터 3년까지는 기여기간으로 간주하며 급료를 받지 않고 가정에서 간호를 한 기간에 대해서는 기여기간으로 간주한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 4. 연금분할 및 병급금지제도의 개선

1998년부터 연금분할제도를 도입하여 가사 또는 양육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던 자가 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일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게 되었다(국민연금법, 제 57조 2).

그러나 재산권에 속하는 연금분할권은 재혼할 경우 재혼기간 동안 해당분할연금의 지급을 박탈하고 있다(국민연금법, 제57조 3).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적 재산권에 속하는 연금수급권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다. 따라서 혼인상태나 횡수에 관계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할시점을 당사자와 배우자가 60세를 초과하게 되는,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시점에서 청구하게 되어 있는 것에서 독일이나 스웨덴과 같이 이혼시점에서 청구하는 사전적 분할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여성의 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은 연금분할을 이혼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연금수급 중 이혼시) 또는 연금수급권(가입기간 중 이혼시)에 대하여 개인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혼 시에 부부의 연금을 등분하는 연금분할을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 연금과 병급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혼한 여성이 소득활동을 함으로써 연금에 가입되어 본인 명의의 연금수급권(혹은 반환일시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할연금과 병급이 되지 않는다. 이는 연금권이 가입자의 각출에 의한 일종의 재산권(소유권)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각출에 의한 유족연금과 본인의 각출에 의한 노령연금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은 재산상의 커다란 손실이 된다. 또한 처음부터 맞벌이 부부가 아니었다면 남편의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을 병급할 경우라도 그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율과 재혼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연금의 병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의 실현은 여성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입안자들과 최고책임자의 인식과 복지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의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비용을 낮추고 여성복지나 가정복지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다.

**주제어** : 국민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임의가입, 연금 크레딧

### 참 고 문 헌

경향신문사(2003). 뉴스메이커. 10. 23. :32.  
국민연금관리공단(2000). 국민연금제도의 쟁점사항에 대

- 한 검토.
- 국민연금관리공단(2002).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민연금관리공단(2003). <http://www.npc.or.kr/data/index-02.html>.
- 국민연금법(2003). <http://www.lawkorea.com/userinfo/loginok.asp?url=법령>
- 김용하(1997). 여성의 국민연금권 확보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 김용하(1999). 공적연금 채무와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15(1).
- 김용하, 석재은(1997).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 31, 247-274.
- 문숙재, 여윤경, 임혜은(2002). 여성노후빈곤과 국민연금제도 확대실시에 관한 연구: 노인가구의 연금소득수급액 결정요인분석. 제6차 춘계학술대회발표집.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석재은(2001).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 양성평등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 엄규숙(2002). 여성과 국민연금. 한국의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회. 서울: 지식
- 윤석명, 주은선(2000). 공적연금 유형의 국제비교(1): 주요국 이원연금체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보고서.
- 이정우(2002). 분할연금제도 및 이혼여성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법 개정관련 주요 쟁점사항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 인경석(2001). 국민연금법 해설. 국민연금관리공단.
- 정재훈(2001). 한국의 연금제도와 성차별. 양성평등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 조홍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2000). 여성복지학. 서울: 학지사.
- 통계청(2003). [www.nso.go.kr/stat.go.kr/statcms/pop/popular.jsp?kind=B](http://www.nso.go.kr/stat.go.kr/statcms/pop/popular.jsp?kind=B)
- 한국여성개발원(2001).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2003). <http://www.kwdi.re.kr/여성통계DB>
- 허지영(2002).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여성 수급권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외성(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서울: 양서원
- Blau F.D., M.A. Ferber(1986). *The Economics of Women, Men and Work*.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2004. 06.16 접수; 2004. 07. 30 채택)